영동군 고시 제2017-125호

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

「지방세법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7년 12월 26일

영 동 군 수

Ⅰ. 건 명 :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

1. 결정항목

가. 신축건물 기준가격 : 「지방세법」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(「소득세법」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·고시하는 금액)

나. 건축물별 시가표준액

1)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(산출체계도, 산출요령)

2) 적용지수(구조지수, 용도지수, 위치지수)

3) 경과년수별 잔가율

4) 가감산특례(가산대상 및 가산율, 감산대상 및 감산율)

5) 증·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

6)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

7)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

2. 세부사항 :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

영동군 이 문서의 소유권은 영동군에 있습니다.

Ⅱ. 건　명 : 201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

1. 결정항목

가. 차　　량

1)정의 2)용어해설 3)적용요령 4)산출예시

나. 기계장비

1)정의 2)용어해설 3)종류 4)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5)적용요령 6)산출예시

다. 선　　박

1)정의 2)내용연수 및 감가율 3)적용요령 4)기준가격 5)잔가율표 6)산출예시

라. 항 공 기

1)정의 2)내용연수 및 감가율 3)적용요령 4)기준가격 5)잔가율표 6)산출예시

마. 시 설 물

1)레저시설 2)저장시설 3)도크 및 접안시설 4)도관시설 5)급·배수시설 6)에너지 공급시설 7)기타시설

바. 부수시설물

*엘리베이터 외 9건

사. 입목, 어업권, 광업권, 회원권, 지하자원

2. 세부사항 : 201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

부　　칙

제1조[시행일]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영동군 이 문서의 소유권은 영동군에 있습니다.